

서울특별시 도봉구 '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' 건립에 대한 동의안

의 안 번호	433
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2월 1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도봉구 내 복지관련 단체들이 여러 건물에 분산되어 무상임대 등으로 운영되거나 공간 협소로 인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.
- 나. 이에,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(도봉구 창동 1-1 부지) 건립 공사의 증축 설계변경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여 어르신, 장애인, 보훈단체 등 복지관련 단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,
- 다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시유지상에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토지개요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-1
- 면 적 : 2,837 m^2
- 소 유 자 : 서울특별시
- 공시지가 : 7,188,958천원(2,837 m^2 × 개별공시지가 2,534천원)

나.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개요(안)

- 사업기간 : 2017.10. ~ 2021. 3.(예정)
- 위 치 :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-1(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 부지)
- 건립규모 : 대지 2,837 m^2 (실제 유용면적: 1,696 m^2)
연면적 4,522.54 m^2 지하2층 ~ 지상5층
 - ※ (기존)지하2층~지상1층 ⇒ (변경)지하2층~지상5층
- 총사업비 : 12,800백만원(전체)
- 주요시설
 - 지상4~5층 : 대한노인회, 노인일자리센터, 노인대학 등
 - 지상3층 : 보훈회관(보훈단체 사무실 및 회의실)
 - 지상2층 :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
 - 지하2층~지상1층 : 동부간선도로 관리사무소

다. 그간의 추진사항

- 동부간선도로 증축 설계변경을 통한 도봉어르신문화센터 건립 제안(도봉구→서울시) (2017.8.7.)
-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(1차: '17.9. 2차: '18.3. 3차: '18.7.)
 - 증축규모 및 설계변경, 시공 등 사업추진 관련 실무 협의
- 서울시 투자심사 심의 완료(2018.11.6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 -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량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 -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.
 - ▶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나. 예산조치

- 증축계획에 따른 비용(설계변경비, 공사비 등)은 도봉구에서 부담하며, 해당 공사발주 부서(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)로 비용 이체·정산

다. 합 의

- 건물소유권 관계
 - 준공 후 건축물대장 및 등기를 일반건축물 공유지분으로 등기
 - ※ 토지: 서울시 소유 / 건물: 해당층별 공유지분 등기
- 시유지 사용료(대부료) 관계
 - 영조물 완공이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 무상사용 관계 안전 상정 예정
- 완공 후 유지관리
 - 통합관제·기계실·관리사무소 공간은 일원화하여 공동사용 하되, 인력배치는 각 기관별 운영
 - (지하2층~지상1층 : 서울시 / 지상2층~지상5층 : 도봉구)

라. 기 타 : 현장사진 및 위치도



현장 위치도



항공사진



현장사진

※ 작성자 : 도로계획과 도로재산팀 정용훈 (☎ 2133-8092)